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14	3	1994. 2. 17.	증재 김 영 호

의안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」 개정

의결사항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72조

제의취지 당행 대출제도의 개편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대한 당행 여신업무이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참고사항>

제외관계 법규조항 본질

금융통화법 제7조

(생략)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(생략)

금융통화법 제72조

1134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생략)

< 붙임 >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」 개정(안)

현 행		개 정 (안)		비 고
1. 여신업무이율		1. 여신업무이율		
구 분	이 율	구 분	이 율	
(신 설)		1.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금		
(신 설)		가. 제1항에 의한 대출	연 5.0%	○ 중액한도대출금리 명시 - 현행 규정의 1. 상업어음 제한인, 2-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 및 2-바-(1) 중 중소소재·부품산업 운전자금과 지방중소기업자금 관련대출을 통합
1. 상업어음 제한인	연 5.0%	(삭 제)		○ 개정(안) 1-가로 통합
2. 담보대출		나. 제2항에 의한 대출	전반월 물가레 평균 이율에 2%포인트를 가산한 이율(소숫점 둘째자리부터는 떨어버림)	○ 현행 규정 2-바-(4)
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	연 5.0%	2. 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담보 대출취급규정」 제3조에 의한 대출금		
(신 설)		가. 농업어음담보대출	연 3.0%	
나. 농업어음 담보대출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1호)	연 3.0%	나. 수산어음 담보대출	연 3.0%	조문 정비
다. 수산어음 담보대출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2호)	연 3.0%	다. 축산어음 담보대출	연 5.0%	
라. 축산어음 담보대출(「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3호)	연 5.0%	(삭 제)		○ 「방위산업지원금융규정」 폐지
마.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	연 5.0%			

현행		개정 (안)		비고
구분	이율	구분	이율	
바.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 담보대출취급규정」 제2조 제1항 에 의한 대출중		(삭제)		○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 대출취급규정」 폐지
(1) 제1항에 의한 대출	연 5.0%			○ 중소기업·부품산업 운전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 관련대출은 개정(안) 1-가로 통합
(2) 제2항에 의한 대출	연 3.0%			○ 산업구조조정관련자금 폐지
(3) 제3항에 의한 대출	연 6.0%			○ 유동성조절자금 폐지
(4) 제4항에 의한 대출	전반월 물가레 평균 이율에 2%포인트를 가산한 이율(소숫점 둘째자리부터는 둘러버림)			○ 개정(안) 1-나로 전환
II 기 타 1. 시행일자 : 1993. 3. 26. 2. 이 규정 2-바-(4)의 물가레 평균이율 산정기준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. 3. 경과조치 :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'에너지' 절약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 2-바-(1)의 이율을 적용한다.		II 기 타 1. 시행일자 : 1994. 3. 15. 2. 이 규정 1-나-의 물가레 평균이율 산정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. 3. 경과조치 : 이 규정 시행일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 (시설자금대출의 경우는 승인기준)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다음의 대출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한다. 가. 금융기관이 '에너지' 절약시설자금대출을 : 연 5.0% 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 나.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 : 연 5.0% 다.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 (1) 제1항에 의한 대출(중소소재·부품산업 운전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 관련대출 제외) : 연 5.0% (2) 제2항에 의한 대출 : 연 3.0% (3) 제3항에 의한 대출 : 연 6.0%		○ 시행일자 명시 ○ 조문 정비 ○ 신규취급이 없는 대출에 대한 경과조치 - 수출산업설비자금, 기술개발자금, 공해방지시설자금,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 등 - 산업구조조정자금, 농어가사채대체 자금 - 유동성조절자금